

# 정 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밀착형 관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상생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광 정책·제도·학술·상품 등의 연구·조사·개발·용역 사업
2. 관광 정책·제도·학술·상품 등의 교육·컨설팅 사업
3. 관광 정책·제도·학술·상품 등의 홍보·출판·전시 사업
4. 토론회·회의 등 행사의 기획·진행 및 여론조사 사업
5. 관광 정책·제도 등의 건의 및 관광종사자 권익강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8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 칙

-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및 별도 기구)** ①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 등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기구 이외에 별도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3조(기부금의 공개)** 본회가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공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성 명 | 주 소                                   | 날 인                                                                                   |
|-----|---------------------------------------|---------------------------------------------------------------------------------------|
| 이창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10길 4-1, 2층           |   |
| 박은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6, 108동 302호 |  |
| 김동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영길 64-14                 |  |
| 윤혜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4길 21-14, 802호           |  |
| 음두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4길 21, 701동 714호        |  |
| 안용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17-3, 102호             |  |
| 고정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마을1길 62, 102동 103호      |  |
| 김병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725, 101동 301호        |  |

##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 설립자 대표 이창희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  
협회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 【기부목적】

- 본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출연 : 12,300,000원(일천이백삼십만원)

### 기부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종 별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예금(계좌번호 : 우체국 510453-02-098320 ) | 현금       | 1계좌 | 10,000,000원 | 운영재산 |
|                                  | 노트북      | 2개  | 1,200,000원  | 운영재산 |
|                                  | 프린터(복합기) | 1개  | 400,000원    | 운영재산 |
|                                  | 책상       | 2개  | 200,000원    | 운영재산 |
|                                  | 회의용 탁자   | 1개  | 200,000원    | 운영재산 |
|                                  | 의자       | 6개  | 300,000원    | 운영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12,300,000원 |      |

2023년 7월 3일

위 기부자 이 창 희 (인)

## 회 원 명 부

| 순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전화번호          | 비 고 |
|----|-----|--------------------------------------|--------|---------------|-----|
| 1  | 이창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10길 4-1, 2층          | 기업인    | 010-2213-7892 |     |
| 2  | 박은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6 108동 302호 | 기업인    | 010-3699-2356 |     |
| 3  | 김동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영길 64-14                | 단체장    | 010-3694-0567 |     |
| 4  | 윤혜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4길 21-14, 802호          | 기업인    | 010-3032-8891 |     |
| 5  | 음두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4길 21, 701동 714호       | 기업인    | 010-8264-0010 |     |
| 6  | 안용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17-3, 102호            | 대학 부교수 | 010-7230-2110 |     |
| 7  | 고정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마을1길 62, 102동 103호     | 기업인    | 010-8660-8300 |     |
| 8  | 김병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725, 101동 301호       | 행정사    | 010-3169-7000 |     |
| 9  | 김창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 4길 36, 301호          | 기업인    | 010-9546-8800 |     |
| 10 | 김경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48, 2층               | 기업인    | 010-3680-4252 |     |
|    |     | 이상 10명                               |        |               |     |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 발기인 대표 이창희 (날인 또는 서명)



# 사업계획서

## I. 주요사업 목표

1. 시범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2.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산업 종사자 등의 인식을 기반으로 관광 관련 정책 등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
3. 적극적인 관광 관련 정책 등의 건의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

## II. 세부사업 내용

### 1. (제1사업명) 관광프로그램 시범연구 사업

가. 목적 :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선도적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문화관광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2023. 8. ~ 2023. 11.
- 장 소 : 본회 및 마을회 사무실 등
- 사업내용 : 본회와 마을회 등의 협업으로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연구·개발

다. 시행방법 : 본회 소속 및 외부 전문가들과 마을회 관계자 등이 협업하여 월 1회 회의를 통해 관련 시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라. 소요예산 : 금 1,500,000원

- 회의수당 : 4회 × 50,000원 × 5명 = 1,000,000원
- 회의준비비 : 4회 × 50,000원 = 200,000원
- 예비비 : 300,000원

마. 기타사항: 필요 시 마을회 방문을 통한 회의 개최 등을 추진

바. 향후계획 : 평가를 통해 추가 연구·개발의 확대 방향을 설정

## 2. (제2사업명) 우수사례 교육사업

가. 목적 : 국·내외의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그 성공 요인 등을 교육함으로써 관광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2023. 11.
- 장 소 : 다목적 강당 등
- 사업내용 :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모범사례 등을 소개·교육

다. 시행방법 :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고 다목적 강당 등을 대관한 후 관광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등을 소개·교육

라. 소요예산 : 금 1,500,000원

- 대관비 : 300,000원 × 1회 = 300,000원
- 강사비 : 500,000원 × 1명 = 500,000원
- 현수막 제작비 : 150,000원 × 2개 = 300,000원
- 다과비: 100,000원 × 1회 = 100,000원
- 예비비: 300,000원

마. 기타사항: 필요시 마을회 등과 사업 공동 추진

바. 향후계획 :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

### 3. (제3사업명)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사업

가. 목적 : 국·내외의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관광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협업 토대 구축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2022. 12.

○ 장 소 : 본회 사무실 등

○ 사업내용 :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우수사례 수집·발간·배포

다. 시행방법 : 본회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국·내외의 자연친화적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엄선한 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읍면 지역 마을회를 중심으로 배포

라. 소요예산 : 금 2,500,000원

○ 자료수집비 : 300,000원

○ 발간비 : 10,000원 × 150부 = 1,500,000원

○ 배포비 : 150부 × 3,000원 = 450,000원

○ 예비비 : 250,000원

마. 기타사항: 발간된 사례집을 마을회 등에 배포하면서 향후 협업의 토대 구축

바. 향후계획 : 사업 평가 후 배포 대상 및 홍보 방법 등의 확대 검토



#### 4. (제4사업명) 여론조사사업

가. 목적 : 과학적 여론조사의 실시로 새로운 관광 정책 등의 건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2023. 10. ~ 2023. 11.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업내용 :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객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 정책 관련 여론조사 실시

다. 시행방법 : 본회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관광정책 관련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관광 산업종사자들에게는 서면조사(이메일 등) 방식으로 실시

라. 소요예산 : 금 1,500,000원

- 조사원 수당 : 100,000원 × 4명 × 3일 = 1,200,000원
- 조사 준비비: 300,000원

마. 기타사항 :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부, 국회 등에 대한 건의기초자료로 활용

바. 향후계획 :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및 보완으로 인식의 변화 등을 점검

#### 5. (제5사업명) 건의사업

가. 목적 : 적극적인 정책 및 제도의 개선 건의로 관광 정책 등의 보완·발전과 관광 종사자 권익강화에 기여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2023. 12.
- 장 소 : 관련 공공기관 등
- 사업내용 : 관광 관련 정책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부, 국회 등에 대한 건의

다. 시행방법 : 관광프로그램 시범연구, 우수사례 수집, 여론조사 등 본회 사업활동의 결과를 기초로, 회원 간의 토론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건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부, 국회 등에 건의

라. 소요예산 : 금 500,000원

- 출장비 : 250,000원 × 2명 = 500,000원

마. 기타사항 : 외부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도 강화

바. 향후계획 : 토론회 개최 등 건의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

작성자: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 발기인 대표 이 창 희



#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3년도

(단위 : 천원)

| 수 입      |        |        | 지 출       |             |        |
|----------|--------|--------|-----------|-------------|--------|
| 구 분      |        | 금 액    | 구 분       |             | 금 액    |
| ①회 비     | 회 비    | 4,400  | ①경상비      | 인 건 비       |        |
|          | 후 원 금  |        |           | 운 영 비       | 1,380  |
|          | 소 계    |        |           | 소 계         | 1,380  |
| ②출연금     | 기본재산   |        | ②퇴직 적립금   |             |        |
|          | 운영재산   | 10,000 | ③법인세      |             |        |
|          | 소 계    |        | ④목적 사업비   | 관광프로그램 시범연구 | 1,500  |
| ③과실소득    |        |        |           | 우수사례 교육     | 1,500  |
| ④수 익 사 업 | 공모사업   |        |           |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2,500  |
|          | 지원사업   |        |           | 여론조사        | 1,500  |
|          |        |        |           | 건의          | 500    |
|          |        |        |           | 소 계         | 7,500  |
|          | 단체보조사업 |        | ⑤기본재산 편입액 |             |        |
|          | 소 계    |        | ⑥차기 이월액   | 목적사업 전 기    |        |
| ⑤전 기 이월액 |        |        |           | 준비금 당 기     |        |
|          |        |        |           | 이월잉여금       | 5,520  |
|          |        |        |           |             |        |
|          | 소 계    |        |           | 소 계         |        |
| ⑥법인세 환급액 |        |        | ⑦         |             |        |
| ⑦        |        |        | ⑧         |             |        |
| 합 계      |        | 14,400 | 합 계       |             | 14,400 |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 발기인 대표 이 창 희

(인)



## 경상비 세부내역

2023년도(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
| 회의비     | 300,000원  | 이사회: 100,000원 × 1회<br>총회: 200,000원 × 1회 |
| 공공요금    | 300,000원  | 50,000원 × 6개월                           |
| 여비      | 180,000원  | 30,000원 × 6회                            |
| 정수기 렌탈료 | 120,000원  | 20,000원 × 6개월                           |
| 소모품 구입비 | 180,000원  | 30,000원 × 6개월                           |
| 예비비     | 300,000원  |                                         |
| 합 계     | 1,380,000 |                                         |